

美 관세 파도에서 살아남기: 실무 유의사항과 대응 전략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미국의 관세 조치가 한층 강화되었다. 품목관세와 보편관세, 그리고 국별 차등 적용되는 상호관세가 본격 시행되면서,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환경은 과거보다 훨씬 불확실성이 커졌다.

보고서에서는 우리 기업의 실무 유의사항을 ①총관세 계산, ②비특혜원산지, ③관세 과세가격 계산, ④파생제품 함량 및 제조지 확인, ⑤관세 조치 확대·변경 가능성, ⑥환적 관세 강화의 총 여섯 가지 쟁점으로 구분해 정리하였다. 이들 요소는 기업의 통관 과정과 비용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향후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

변화한 대미 통상 환경에 대한 대응전략으로는 ▲관세 과세가격에 근거한 관세 절감 방안 모색, ▲사전심사(Advance Ruling) 활용, ▲미국向 수출 공급망 관리 강화, ▲대미투자 검토 등이 필요하다.

1. 미국 관세조치 개요

▶ 품목관세·보편관세·상호관세 등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예고한 관세조치가 본격 시행

- [품목 관세] 8/21 기준,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제품, 동(銅) 제품에 50%, 자동차·부품에 25%의 관세 부과

* 한국, EU, 일본, 영국에 한해 관세 인하 등 일부 품목관세 예외 부여

- 3/12 시행된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6/4부로 기존 25%에서 50%로 인상

- 철강·알루미늄·동 파생제품에 대해서는 철·알·동 함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보편·상호관세 적용

- 자동차(부품) 관련,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①USMCA 총족 제품 중 미국산 부품 가치 관세 면제, ②미국 내 생산용 수입 부품에 관세 상쇄금 지급

<품목 관세 시행일 및 세율>

시행일(現地)	3/12	4/3	5/3	6/4	8/1	현재
철강·알루미늄	25%			50%		
동 제품					50%	
자동차		25%				
자동차 부품			25%			

자료: 백악관 관보 참고하여 재구성



- **[보편 관세]** 전 세계 모든 국가 수입품에 10% 관세 부과(4/5 시행)
- **[상호관세]** 미국과 협상을 완료한 국가는 15-20% 수준에서 세율이 책정되었으나 未협상국은 최고 50%까지 인상 (8/7 시행)
 - * 단, 8/7 前 선적하고 10/5 前 통관을 완료한 물품에는 기존 관세율 적용
- 영국(10%)을 제외하면, 韓·日· EU(15%), 필리핀·인니·태국·캄보디아·말레이시아(19%), 베트남(20%) 등에 부과한 관세는 15~20% 수준
- 대만(20%), 인도(25%), 남아공(30%), 스위스(39%)와의 협상은 타결되지 않았고, 캐나다와 브라질은 각각 35%, 50%까지 인상

<국별관세 시행일 및 세율>

시행일(現地)	4/5	4/9	7/9	8/1	8/7	현재
보편관세	10%					
상호관세		1차 연기	2차 연기	3차 연기	시행 (국별 차등)	

자료: 백악관 관보 참고하여 정리

- **[마약·국경관세]** 국가긴급상황법(NEA, National Emergency Act)에 따라 선포(1/20)한 국가긴급상황을 근거로 캐나다(35%)·멕시코(25%)·중국(20%)에 별도 관세 부과
- ▶ 한미 무역합의(7/30)를 통해 한국은 상호관세 15%, 품목관세 인하 또는 최혜국대우 등의 협상 결과 도출

<한미 무역합의 주요 내용>

- **(상호관세)** 미국의 對한국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
- **(품목관세)**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자동차 및 부품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
 - 8월로 예상되는 반도체·의약품 관세 부과 시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 대우 약속
 - 시행중인 철강·알루미늄 관세 및 구리 제품 관세(각 50%)는 관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
- **(대미 투자)** 총 \$3,500억 상당 대미 금융 패키지 조성
 - 조선업 \$1,500억, 반도체·원전·이차전지·바이오 등 \$2,000억으로 구성되며, 자금은 필요할 때마다 집행하는 캐피탈콜(Capital call) 방식
 - 투자 방식은 ①보증, ②대출, ③직접투자이며, 이 중 보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전망
- **(미국산 구매)** 향후 4년간 미국산 LNG 등 에너지 제품 \$1,000억 구매
 - * 최근 4년(`21~`24) 미국산 LNG(\$186억), LPG(\$191억), 원유(\$490억) 도입 규모는 약 \$867억 수준
- **(시장 개방)** 비관세장벽 개선으로 일부 미국산 상품의 시장 접근 개선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2025)

2. 실무 유의사항

[요약]

- ① 총관세 계산 방식에 유의
- ② 美 현지 원산지 판정 방식인 **비특혜원산지 기준** 숙지
- ③ 관세 과세가격 계산 방식의 차이
- ④ 품목관세 대상인 **파생제품의 원자재 함유량 및 제조지** 확인 철저
- ⑤ 품목관세 **확대 가능성 및 기존 조치 변경** 예의주시
- ⑥ **환적상품(transshipment goods) 관세 강화**에 주의

1 총관세 계산 방식에 유의

- 총관세는 실행관세(한미 FTA 특혜세율 또는 MFN 세율)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관세 또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등이 더해지는 구조

<한국산 물품의 미국 수출 시 적용하는 관세율>



(사례) 자동차(8703) = FTA 관세율(0%) + 무역확장법 232조(25%) = 25%

자료: 관세청(2025) 자료 참고하여 재구성

주: 한미 FTA 실효관세율은 미국의 對한국 수입 중 FTA 적용 품목에 대한 관세액을 해당 품목 수입액으로 나누어 계산
(자료: USITC)

- 관세별 합산·배제 여부에 유의하여 총관세를 계산하고, 과소신고 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중첩 배제) 자동차 및 부품 품목관세(25%)와 철강·알루미늄·동 품목 관세(50%)는 이중 부과되지 않음
 - (우선순위) 특정 제품이 2개 이상 관세 조치 대상인 경우 ①자동차(부품) 관세→②철·알 관세→③멕시코(25%)·캐나다(35%) IEEPA 관세* 순으로 1가지만 적용¹⁾
 - * USMCA 총족 제품인 경우 ③對멕시코·캐나다 IEEPA 관세 부과 유예
 - ** ③對멕시코·캐나다 IEEPA 관세 적용시 보편관세, 상호관세 부과 배제

1) 백악관(2025.6.3.), "ADJUSTING IMPORTS OF ALUMINUM AND STEEL INTO THE UNITED STATES", 백악관.

- (함량 구분)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의 경우 철강·알루미늄 함량 가치에는 232조 관세(50%), 그 외 가치에는 원산지에 따라 對멕시코·캐 IEEPA 관세 또는 상호관세 부과
- (관세 면제) 품목관세 대상 혹은 조사중인 품목²⁾에는 상호·보편관세를 부과하지 않음

<관세조치 적용 예시>

대상			적용 관세조치	관세율
자동차 및 車부품			①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	25%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관세 대상 자동차 부품			①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	25%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철·알 함량 가치		②철강·알루미늄 관세 ^{주)}	50%
	그 외 가치	멕시코·캐나다産	③멕시코·캐나다 IEEPA 관세	25% ^{멕시코} or 35% ^캐 (USMCA 충족시 면제)
		그 외	보편관세 또는 상호관세	국별 차등

자료: 한아름·전윤식(2025) 참고하여 업데이트

주: 미국에서 제강된 철강이나 주조·제련된 알루미늄을 사용한 제품은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 면제

2 美 현지 원산지 판정 방식인 비특혜원산지 기준 숙지

- 무역확장법 232조 또는 보편·상호관세의 원산지 결정 기준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비특혜원산지기준*’을 적용

* FTA 등 특혜관세가 없는 일반 무역 상황에서 상품이 어느나라 産인지 결정하는 기준

- 양국 간 합의한 규정을 적용하는 FTA 등 특혜원산지규정과 달리 비특혜원산지는 국제법상 통일된 규정이 미비하여 예측가능성이 부족
- 특히 CBP의 비특혜원산지기준은 ‘실질적 변형기준’에 따라 건별로 판단하는 방식으로 동 기준은 영미법 체계에 따르므로 구체적 법령 규정이 없고 판례법 또는 정성적 판단에 근거³⁾

<우리나라와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판정 기준 비교>

국가	근거 규정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원칙)	비고(예외/특징)
한국	대외무역법 대외무역관리규정	CTSH(6단위 세번변경기준)	▪ 일부 품목에 ‘부가가치기준’ 및 ‘가공 공정기준’ 도입
미국	19CFR134 (원산지표시규정)	①품목, ②특성, ③용도 등 3요소 변화 여부로 사안별 판단	▪ ‘세번변경기준’ 등 구체적 기준 없음 ▪ 섬유 및 의류에 한해 별도 기준 도입

자료: 김현철, 김학민(2021) 일부 발췌

2) 백악관(2025.4.2.), “Regulating Imports with a Reciprocal Tariff to Rectify Trade Practices that Contribute to Large and Persistent Annual United States Goods Trade Deficits” 부속서II, 백악관.

3) 김현철, 김학민(2021.5.28.), “무역원활화를 위한 비특혜원산지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원산지판정(결정) 기준을 중심으로”, 관세학회지 제 22권 제2호.

- 수입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해 만든 완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기준상 한국산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에 주의
- 미국의 경우, 구체적인 기준 제시 없이 미국 국제무역법원의 판례를 인용하여 품목·특성·용도 등 3요소 변화 여부로 판단하므로 CBP에 사전심사(advance ruling)를 받아보기 전에는 정확한 판단이 불가
- (사례1) 한국은 비특혜원산지 기준상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할 경우 한국산으로 인정되나, 미국 기준으로는 한국산 판정 가능 여부 불확실

<(사례1) 일본산 부품을 사용한 볼베어링의 비특혜원산지 판정>

구분	한국 기준 적용시	미국 기준 적용시
수출 완제품	볼 베어링 (HS 8482.10)	
전용 부분품 HS 코드	HS 8482.91 - 볼, 니들, 롤러 분류 HS 8482.99 - 기타 볼 베어링 전용 부분품 분류	
비특혜 원산지 기준	CTSH	품명, 특성, 용도 등 3요소 변화 여부로 실질변형 여부 판단
원산지 판정	일본산 HS 8482.91의 부품을 사용한 경우에도, 수출품은 한국산 판정 가능	일본산 HS 8482.91의 부품(볼 등)을 사용한 경우, 한국산 판정 여부 불확실
원산지 표시	MADE IN KOREA 표시 가능	동일/유사 판례 검색 또는 관세청(CBP) 사전심사 받기 전에는 MADE IN KOREA 표시 여부 불투명

자료: 김현철, 김학민(2021)

- (사례2) 한미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기준상 다른 나라 産으로 판정될 경우 결정세율이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

<(사례2) 베트남산 부품을 사용한 제도용 잉크: 원산지에 따른 관세율 차이>

구분	실행세율		상호관세		결정세율(%)
	FTA 원산지기준	세율(%)	비특혜 원산지기준	세율(%)	
한-미 FTA 활용	충족	0	충족	15	15
			불충족(베트남산)	20	20
한-미 FTA 미활용	-	3.1	충족	15	18.1
			불충족(베트남산)	20	23.1

자료: 관세청(2025) 사례 참조하여 세율 업데이트

3 관세 과세가격 계산 방식의 차이

$$\text{관세} = \text{과세가격} \times \text{CBP 고시 환율} \times \text{관세율}$$

- 미국의 관세 과세가격은 기본적으로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에 따르며, 이는 국제 운임·보험료를 제외하므로 사실상 수출지 본선인도가격(FOB)을 의미
- 거래가격은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될 때 ‘실제로 지급되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으로, 가산요소를 추가하고 제외항목을 차감하여 계산
- EU, 한국, 일본, 중국 등 다수 국가가 관세 과세가격으로 운임·보험료를 포함한 조건(CIF)을 적용하는 것과 차이가 있어 유의

<CBP 지침에 따른 거래가격의 가산요소와 제외항목>

가산요소	제외항목
A. 구매자(수입자)가 부담한 포장 비용 B. 수입자가 부담한 판매 수수료 C. 적절히 안분된 어시스트(assist)의 가치 D. 판매의 조건으로서 수입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로열티 또는 사용료 E. 수입물품의 재판매·처분·사용으로 발생한 대가 중 판매자(수출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귀속되는 금액	1. 수출국에서 미국 내 수입지까지의 국제 운송에 수반되는 운송, 보험 및 관련 서비스 비용 2. 별도로 식별되는 경우, 물품이 미국에 수입된 후의 건설, 설치, 조립, 유지보수, 기술 지원 제공에 소요된 비용 또는 물품이 미국에 수입된 후의 운송 비용 3. 관세 및 기타 연방 세금, 그리고 통상적으로 미국 내 판매자가 부담하는 연방 소비세

자료: CBP 지침(guidance document, 2020.2.26.)

주: 가산요소는 ①이미 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②해당 금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는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가산

4 품목관세 대상인 파생제품의 원자재 함유량 및 제조지 확인 철저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관세 대상에 광범위한 파생제품을 포함하고 함량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 함량 가치 산정에 불확실성 존재
- CBP는 파생제품의 철강·알루미늄 함량 가치를 해당 함량에 대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액’으로서, 수출국에서 미국 수입지까지의 국제 운송, 보험 및 관련 서비스 비용·수수료·경비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⁴⁾
- 그러나 총액 중 어디까지가 함량 가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해석상 모호한 부분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기업별 실무 해석과 적용에 차이 발생
- 비과세 기준액(de minimis)이 없어 철강·알루미늄이 약간이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신고할 필요
- * 관세, 가치, 중량 신고시 소수점 이하 두자리(예: 0.01)까지 신고 가능

4) CBP, “Section 232 Tariffs on Steel and Aluminum Frequently Asked Questions”, CBP.

<철강·알루미늄 함량가치 산정 쟁점>

구분	쟁점	설명
공통 비용 배분 문제	간접비 포함 범위	노무비, 가공비, 관리비 등 간접비를 어디까지 철강/알루미늄 함량 가치에 포함해야 하는지 불명확
복합재/혼합재	원가 안분 방식	철강·알루미늄과 타 원재료가 혼합된 경우, 원재료 단가 비율로 안분할지,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추가 부가가치까지 포함한 비율로 안분할지 불명확
송장(invoice)	자료의 불완전성	- CBP는 지급 총액은 송장에 기반한다고 했으나, 송장에 철강/알루미늄 함량이 별도로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이 경우 수입자는 제조회사 명세서 등을 근거로 함량 가치를 산출해야 하지만, 그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불명확

자료: 실무 애로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 알루미늄 및 파생제품의 경우 제련·주조 국가를 미상으로 신고할 경우 200%의 관세가 부과되므로 제조사 확인에 유의⁵⁾
- 기존에는 알루미늄과 그 파생제품의 제련·주조 국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미국 외 국가로 임의 신고 후 사후 정정이 가능했으나, 6월 28일부터 해당 국가정보 미확인시 러시아산 제품에 적용되는 관세(200%)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제 강화

<알루미늄 및 파생제품 232조 관세조치 주요 내용>

제련·주조국	기존	변경
미국	0%	0%
러시아	200%	200%
그외	50%	50%
미상(Unknown)	50%	200%

자료: 이유진(2025)

5 품목관세 확대 가능성 및 기존 조치 변경 예의주시

- 美 상무부는 업계 요청 및 직권으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관세 대상을 확대
- 철강·알루미늄에 대해서는 年 3회(1월, 5월, 9월), 자동차·부품에 대해서는 年 4회(1월, 4월, 7월, 10월) 파생제품 추가 요청을 받고 있으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2주)을 거쳐 관세 부과 여부 결정
- 최근 업계요청에 따라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407개 품목을 추가했으며(현지 시각 8/15), 정례절차에 따라 향후 관세 대상은 지속 확대될 전망⁶⁾
- * 추가된 파생제품 관세는 8/18 美 동부 표준시 0시 1분부터 시행

5) 이유진(2025.6.20.), “美, 알루미늄 파생제품 관련 제련·주조국 신고 의무 강화”, 한국무역협회.

6) 한아름(2025.8.18.),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 대상 파생제품 확대”, 한국무역협회.

- 상무부는 직권으로 알루미늄 파생제품(맥주, 빈 알루미늄캔)과 철강 파생제품(냉장·냉동고, 식기세척기, 세탁기, 건조기 등)을 관세 대상으로 추가한 바 있음(각 4/14, 6/23)
- 이밖에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폴리실리콘 등에 대한 232조 조사가 진행중이며 이르면 8월 중 일부 관세조치 발표 예상
- 보편·상호관세 등 IEEPA에 따른 관세 조치가 미국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으며(5/28), 항소심 결과에 따라 향후 해당 관세 조치가 무효화될 가능성
 - IEEPA 관세가 무력화될 경우, 트럼프 정부는 다른 수단을 통해 관세 조치를 이어갈 수 있음⁷⁾
 - * 관세 수단으로 무역적자에 대한 통상법 122조 관세(최대 15%), 불공정 무역행위 및 상업적 이익 침해에 대한 관세법 338조 및 통상법 301조 등 사용 가능
- 백악관은 시장 반응과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 관세율 및 예외·면제 조항을 수시로 조정하고 있으므로 추가 발표를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
 -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아직 협정을 체결하지 못한 국가들과의 무역 협상을 10월 말까지 대부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으며(8/10), 그 결과에 따라 중국·멕시코 등 未합의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추후 변경될 수 있음

6 환적상품 관세 강화에 주의

- 관세 회피 목적의 우회수출이 적발될 경우, 국별 상호관세 대신 40%의 징벌적 관세 및 법률에 따른 기타 벌금이 부과됨⁸⁾
 - 동 조치는 중국산 제품이 미국의 고율 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동남아 및 캐나다·멕시코 등 우회수출 경로로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
 -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7/2)·인도네시아(7/15)와의 무역합의에 환적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명시했으나, 행정명령(7/31)을 통해 환적 관세 대상을 전세계로 확대
 - 외국산 물품 반입 후 단순 재포장 가공만 거치거나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환적국을 원산지로 표기할 경우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 필요
- 최근 우리 관세청도 미국 관세정책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대응본부를 설치하고 우회수출 수사를 강화⁹⁾
 - 미국으로 선적되기 전 수출검사를 강화하여 원산지 위반 물품을 차단하고, 원산지 세탁 고위험 물품 정보를 CBP에 제공하여 현지 적발을 지원할 방침¹⁰⁾
 - * 우범정보 예시: ①제3국에서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통관 절차 없이 미국 반송, ②동일한 기업이 같은 품목을 수출입시 원산지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 등

7) 이정아·한주희(2025.5.30.), “美 국제무역법원(CIT), IEEPA 관세 무효 판결”, 한국무역협회.

8) The White House(2025.7.31.), “FURTHER MODIFYING THE RECIPROCAL TARIFF RATES”, The White House.

9) 관세청 보도자료(2025.4.21.), “관세청, 국산둔갑 우회수출 집중 단속한다”, 관세청.

10) 관세청(2025.4.11.), “미국 행정부 관세정책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 전략”, 관세청.

3. 대응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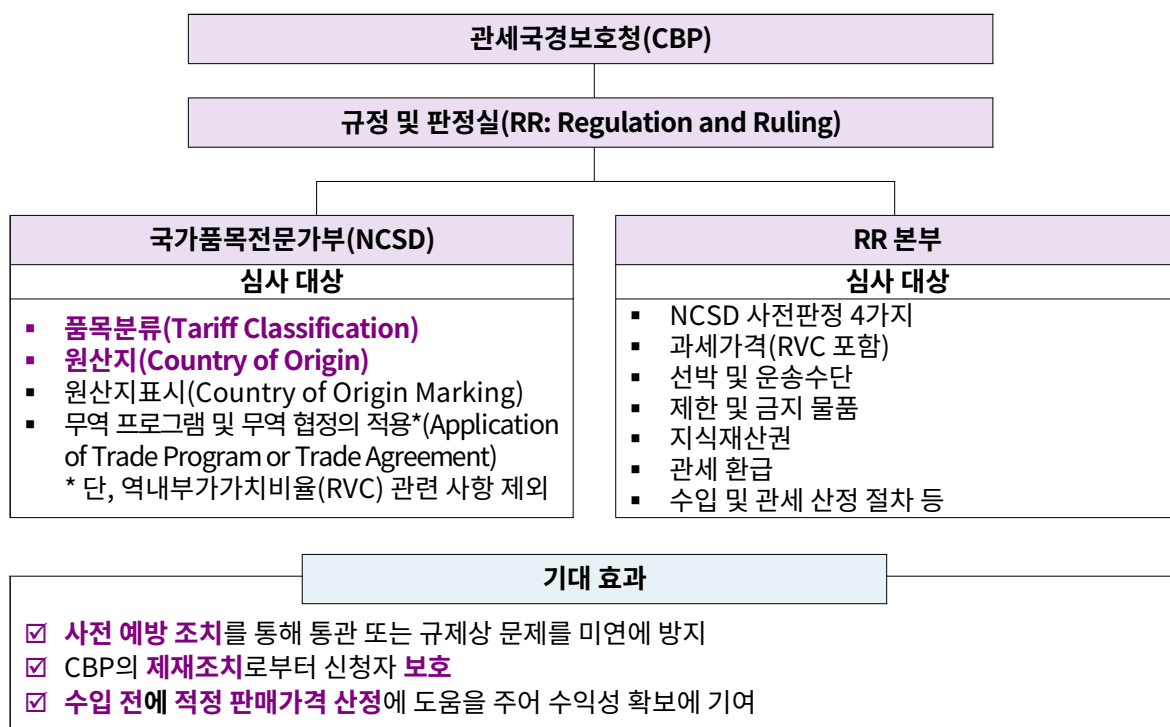
1 미국 관세 ‘과세가격’의 이해를 통한 관세 절감 방안 모색

- 수출 계약을 CIF 또는 DDP 조건으로 체결한 경우에도 관세 신고 때 과세가격을 FOB 기준으로 조정해 불필요한 관세 부담 절감 가능
- 과거에는 미국의 실행세율(한미 FTA 특혜세율 또는 MFN 세율)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관세 과세가격에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품목별·국가별 관세가 광범위하게 부과되면서 과세가격 산정이 기업의 실제 관세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 운임·보험료 등 CBP가 거래가격의 ‘제외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비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차감 근거자료를 문서로 구비하는 것이 필요
- * 운임·보험료가 관세 신고 시점에 확정되지 않고 사후에 정산되는 경우, 통관 단계에서 이를 잠정가격(Provisional Value)으로 표시하고 이후 미국 세관의 사후조정(reconciliation) 절차를 거칠 수 있음

2 사전심사(Advance Ruling)를 활용한 리스크 관리

- HS 품목분류 또는 원산지판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수출자는 CBP에 미국으로의 상품 수입과 관련한 구속력 있는 사전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
- * 사전심사: 원산지, 품목분류 등 관세 부과와 관련된 중요 요소를 CBP가 사전에 판정해 주는 구속력 있는 서면 결정

<사전심사 담당 부서, 심사 대상 및 기대 효과>



자료: 한국원산지정보원(2025.6.) 참고하여 재구성

- 품목관세가 광범위하게 적용되면서 품목분류가 관세율 산정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으며, 분류가 모호한 경우에는 사전심사를 통해 관세 절감을 모색할 수 있음

[사례1. 품목 분류 (Ruling no. N348713, 2025.5.16.)]

자동차 변속기 부분품을 철강기타제품(HS 7326.90-8688)으로 분류시 철강 함량에 50%의 관세가 부과되나, 사전심사 결과 유압밸브부분품(HS 8481.90-9040)으로 분류되어 상호관세(韓 15%) 부과

- 중국, 베트남 등 한국보다 높은 상호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국가에서 원자재·부품을 조달한 경우, 원산지판정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사전심사 활용을 검토

[사례2. 원산지 판정 (Ruling no. N340244, 2024.6.5.)]

①한국에서 전선을 생산하고 ②중국에서 절단·조립 과정을 거쳐 ③한국으로 재수입한 뒤 ④검사·포장 후 ⑤대미 수출 하는 경우, 중국에서 수행되는 공정(②)이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중국산 또는 한국산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사전심사에서 한국산 전선에 완제품의 ‘본질적 특성(Essential Character)’을 부여해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정

- CROSS¹¹⁾에서 결정문 번호나 물품 명칭 등을 검색해 유사 사례를 조회할 수 있으며, 실제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유의

3 미국向 수출 공급망 관리 강화

- 우회수출 조사 등을 통해 고율의 對중국 반덤핑·상계관세 조치가 한국의 대미 수출에 확대 적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미국향 공급망 관리를 강화할 필요

* 우회조사 유형: ①미국내 조립·완성, ②제3국 조립·완성, ③사소한 변경, ④추후 개발된 물품 (자료: 미 관세법 781조)

- 특히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은 제강·제련 단계의 부가가치 비중이 높아 중국에서 제강·제련된 제품을 조달할 경우 우회조사에서 긍정판정이 내려질 여지가 큼¹²⁾
- 기존 반덤핑·상계조치를 적용받는 자재의 해외 판매 거래가 우회수출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¹³⁾
- 수출 대상국에 맞추어 공급망을 별도로 설계·운영함으로써 리스크 최소화
 - 미국向 수출 공급망은 비용 효율성보다는 안정성과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어 설계하되, 타지역向 공급망은 저렴한 임금과 원가를 바탕으로 한 전통적인 생산지 구축 전략을 유지할 수 있음

11) CUSTOMS RULINGS ONLINE SEARCH SYSTEM (CROSS), 주소: : <https://rulings.cbp.gov/home>

12) 이유진(2023.5.17.), “미국의 우회조사 급증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한국무역협회

13) Ibid.

4 기회·위기 요인을 고려한 대미 투자 검토

- 대미 수출에 대한 고율 관세가 우리 기업의 수익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미국 매출을 위한 생산지 선택에 신중을 가할 필요
 -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관세 대폭 인상에 더해, 미국 내 생산 업체에 한해 세제혜택 및 규제 편의를 제공할 방침
 - * 당초 IRA를 폐지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와 달리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주요 혜택을 유지했으며, 바이든 행정부에서 도입한 CHIPS Act상 반도체 세액공제를 기존 25%에서 35%로 확대 (7/4 대통령 서명)
 - ** 미국 내 생산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21%→15%)를 공약한 바 있으나, 현 시점에서 추가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음
- 미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해외직접투자 대상국으로서, 우리나라의 대미 해외직접투자 금액은 2021년부터 4년 연속 200억 달러를 상회
 -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등 제조업 분야 기업들도 대규모 투자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으며¹⁴⁾, 최근 한국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총 3,500억 달러 상당 대미 투자 펀드 조성에 합의¹⁵⁾
- 미국 내 제조업 투자 조치의 경제적 효과가 가시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추후 정권 교체로 인한 정책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함
 - * 현대차그룹의 메타플랜트 투자는 트럼프 1기 정부(2017년 1월~2021년 1월) 시절 결정돼 2025년 3월 준공 完
- 단기적으로는 미국 현지 투자를 위한 기계·설비·소재 등을 수입할 경우 해당 품목에도 관세가 부과되어 투자비 상승 불가피
- 이밖에 높은 인건비, 숙련된 노동자 부족, 현지 소재 및 부품 조달망의 취약성, 규제·인허가 지연 등은 현지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로서, 국내 생산·수출 대비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

14) 도원빈(2025.5.29.), “대미 무역수지 확대의 요인별 분석”, 한국무역협회.

15) 통상연구실(2025.8.6.), “주요국 상호관세 및 대미 무역합의 현황과 평가”, 한국무역협회.